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41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조계원
오세희 · 조인철 · 문금주
이개호 · 문대림 · 김교홍
맹성규 · 이성윤 · 김준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

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제16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부칙 같은 항 제6호 중 “15년”을 “2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81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020호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 정된 내용 포함)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 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 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u>2027년 3월 1일</u>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u>16조제2항</u>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 매할 수 없다.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 한 특례) ① ----- ----- ----- -----<u>2032년 3월 1일</u>----- -----제29 <u>조제2항</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 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 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 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u>2</u> <u>027년 3월 1일</u>까지 「보험업 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③ ----- ----- ----- ----- -----<u>20</u> <u>32년 3월 1일</u>----- -----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략)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u>15년</u>까지: 100분의 25 ④ ~ ⑩ (생략)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20년</u>----- ----- ④ ~ ⑩ (현행과 같음)
---	--